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94

발의연월일: 2020. 10. 13.

발 의 자:김성원·김정재·이주환

이종성・이 영・성일종

임이자 · 최승재 · 윤창현

엄태영 • 권명호 • 지성호

이명수 · 이종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6,053명인데, 그중 도로 폭 13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019명으로 66.4%나 차지하고 있어 생활도로에서의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찰 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일정 도로의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지침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이 미약 한 실정임.

이에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 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제138조의2, 제147조의2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또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 2. 학교·공원·관공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
- 3.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인접 지역
- 4. 그 밖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활도로구역에서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의2 본문 중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를 "어린이 보호구역, 제12조의2"로, "장애인 보호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과 제12조의3에 따른 생활도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호구역에는"을 "보호구역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도로구역에는"으로 한다.

제14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3에 따른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21년 1월 1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		
	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또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생활		
	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2. 학교·공원·관공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지역3.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의 인접 지역		
	4. 그 밖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조		
	례로 정하는 지역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② 사마의 운전사는 세1양에
따라 지정된 생활도로구역에서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
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
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도로구역
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국
토교통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한
<u>다.</u>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어린이 보호구역, 제12조의2
장애인 보호구역
과 제12조의3에 따른 생활도로
<u>구역</u>
i
보호구역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도
<u>로구역에는</u>
② (현행과 같음)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12조의3에 따른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21년1월 1일